

부 록

- 서산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
- 서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
- 서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
- 채무부담승인내역
- '92주요사업현지답사계획

서산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

서산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

제 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의료업무등의 수당)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업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일반직 공무원 의사 : 「별표 1」의 지급구분표

2.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: 「별표 2」의 지급 구분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구분	전문의	일반의
갑지	월609,000원이하	월518,000원이하
을지	월695,000원이하	월614,000원이하
병지	월791,000원이하	월710,000원이하

비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한다.

※ 급지의 구분

- 갑지 : 특별시, 직할시, 도 및 시·구
- 을지 : 병지를 제외한 74개군
- 병지 : 전국 62개군중(충남 : 서산군, 서천군, 청양군, 당진군)

[별표 2]

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동급별 근무연수	가 급	나 급
5년이상	월1,012,000원이하	월673,000원이하
4년이상	월1,006,000원이하	월667,000원이하
3년이상	월1,000,000원이하	월661,000원이하
2년이상	월 995,000원이하	월656,000원이하
2년이하	월 989,000원이하	월650,000원이하

비고 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